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996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1일 발 의 자:김원택, 강석주, 고광민,

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, 박화희, 봉양순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 이봉준, 이상욱, 이은림, 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 최진혁, 허 후, 홍국표 의원(48명)

1. 제안이유

○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이자 대표적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 하고 씨름 정책 마련 및 추동력 확보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씨름 진흥법」,「씨름 진흥법 시행령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·발전시키고,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씨름의 세계화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씨름지도자"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 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.
- 2. "씨름시설"이란 씨름의 경기·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부대시설물을 말한다.
- 3. "씨름단체"란 씨름의 발전·교육·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및 씨름협회, 씨름단, 법인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고, 씨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씨름진흥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씨름진흥계획(이하 "진흥계획"이라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
- 2.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
- 4.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씨름과 문화·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
- 6.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「씨름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씨름 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씨름의 날) ①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· 진흥을 위하여 「씨름 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씨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6조(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)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 · 운영할 수 있다.
- 제7조(포상) 시장은 씨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이 조례 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씨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